

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0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
발 의 자 : 임종국, 김경영, 김창원,  
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 
박기열, 박기재, 박순규,  
서윤기, 성흠제, 송정빈,  
양민규, 이영실, 장상기,  
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 
한기영, 황규복 의원(20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며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(안 제1조).
- 나. 준용규정인 “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”을 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”으로 변경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11조).

- 다.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상 강화(안 제7조).
- 라.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변경(안 제8조).
- 마.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·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(안 제12조제2항).
- 바.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조항 신설(안 제13조의2).
- 사.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,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시티지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변경(안 제17조).
- 아.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조항 신설(안 제25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”을 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시민의 존엄·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5년마다”를 “3년마다”로 하고, 제5조제3항 중 “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”을 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”으로, “국가정보화 기본계획”을 “지능정보 사회 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7조제2항중 “위원장 1명”을 “공동위원장 2명”으로 하며, “25명 이내”를 “30명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위원장과”는 “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이 되고” 라고 하고, “호선”을 “호선(互選)”으로 하며,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당연직 위원 : 스마트도시정책관, 교통·안전·환경·복지·경제·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

제7조제5항 중 “담당 사무관”은 “부서의 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,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호선”을 “호선(互選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1조제2항”을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“정보통신기술”을 “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”로 하고,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투명하고,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시민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) ① 시장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, 관리·운영,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 (이하 “시범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시범지구 조성의 목표·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2. 시범지구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
3.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범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있으며, 사업이 국제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”를 “있다”로 하고, 제17조제3항 중 “사업 정산서”를 “사업 결과 및 정산서”로 하고,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 중 “호선”을 “호선(互選)”으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포상)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,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 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스마트도시</u>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스마트도시법"이라 한다)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본원칙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기본원칙)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시민의 존엄·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.</u></p>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시장은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~ 4.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-----  
-----  
--- 3년마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-----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공동위원장 2명-----  
----- 30명 이내로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

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.

1. (생략)
2. 당연직 위원 : 스마트도시정책관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

- ④ (생략)
-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- ⑥ (생략)
- 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,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~ ⑤ (생략)
- 제9조(분과위원회)

-----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이 되고,-----  
호선(互選)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: 스마트도시정책관, 교통·안전·환경·복지·경제·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-----  
-----  
-----부서의 과장-----.

- ⑥ (현행과 같음)
- 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-----  
-----  
-----.
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9조(분과위원회)

① (생략)

② -----

호선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11조(스마트도시책임관)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사업의 조정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1조제2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(이하 "책임관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(생략)

제12조(부문별 정책의 추진) ①(생략)

<신설>

②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, 블록체인,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호선(互選)---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스마트도시책임관) ① -----  
-----  
---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부문별 정책의 추진) ①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투명하고,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시민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-----

-----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-

-----  
-----.

<신 설>

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지원)

- ① (생 략)
-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

제13조의2(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

- 정) ① 시장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, 관리·운영,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(이하 “시범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1. 시범지구 조성의 목표·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  - 2. 시범지구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
  - 3.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시범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지원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  
-----

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기구 사무총장(이하 "사무총장"이라 한다)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사업이 국제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이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사업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<신 설>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있다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사업 결과 및 정산서-----  
-----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⑤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8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·운영)

① (생략)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~ ④ (생략)

<신 설>

제18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·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호선(互選)-----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포상)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,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문서번호

2021032500000010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임종국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백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 03. 25.

회신일 : 2021. 03. 3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##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(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), 제25조(포상)에 따라 비용 발생
  - ※ 같은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 - ※ 같은 조례안 제2조, 제5조 제3항, 제11조 제1항은 상위법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 - ※ 같은 조례안 제3조 제4호는 기본원칙을 추가한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 - ※ 같은 조례안 제7조 제2항, 제3항, 제3항 제2호, 제5항은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 - ※ 같은 조례안 제8조 제1항은 위원장의 권한을 추가하여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 - ※ 같은 조례안 제12조 제2항, 제3항은 정보화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 - ※ 같은 조례안 제17조 제2항, 제3항, 제4항은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,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시티지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제13조의2(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) 신설에 따라 스마트도시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- 제25조(포상) 신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포상금액 및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